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위탁업무 계약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에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이하 『추가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추가지원사업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추가지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기관(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자격을 승인한 자를 말한다.

② “바우처”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정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가능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③ “추가지원사업 비용 예탁금”이라 함은 바우처 사용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위탁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탁자”가 예탁 받은 금액(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지원기관”이라 함은 대상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위탁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탁자”에게 통보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등) ① 『추가지원사업』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로 한다.

가. 대상자의 자격정보 관리

나.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발급 업무

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지원기관에 급여비용 지급 업무

라. 다목에 의하여 과오 또는 부정 지급된 비용의 환수

마. “위탁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예탁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

바. 위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사. 기타 『추가지원사업』에 필요한 업무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 업무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추가지원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재위탁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낙을 받아 『추가지원사업』에 필요한 업무 또는 제3조에서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추가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재위탁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추가지원사업』 위탁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재위탁계약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금 지급 등) ① “위탁자”는 『추가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지원사업』 비용을 예탁할 수 있도록 예탁금 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위탁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탁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1항 다목의 비용을 지급한다.

제6조(추가지원사업의 회계연도) 추가지원사업 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예탁금의 관리) “수탁자”는 예탁금의 관리와 그 회계를 “수탁자”의 재정 및 회계와 별도로 구분·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탁금의 정산 및 환급) 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탁한 자금에 대하여 매월 정산을 실시한 후 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예탁금잔액 등 그 정산내역을 “위탁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추가지원사업 종료 후 “위탁자”의 예탁자금 잔액 및 이자를 “위탁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급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공유) 『추가지원사업』 위탁업무에 관해 필요한 자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유한다.



제10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계약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하는 때부터 최소한 30일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가지원사업 지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계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의 일부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관계 규정 또는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추가지원사업』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을 명확히 하고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비밀유지 및 정보 등의 보호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추가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정보 등은 그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내용과 정보 등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한다.

제16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업무 수행 중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때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수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위탁 업무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제17조(위탁업무 비용의 지원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추가지원사업』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 비용은 시·도별 예탁금 비율을 기준으로 매년 위탁업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추가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되, “위탁자”는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처리업무 등) “수탁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해서 본 사업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관한 위탁업무 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아닌다.**

2017년 12월 28일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계약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계약자 : 사회보장정보원장 임 병 인

